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34
----------	------

제출년월일 : 2021년 4월 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자치경찰제의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소방공무원 시·도별 기준정원이 증원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위원회 사무기구 정원 증원(36명) 및 재배치(7명)

1) (증 원) 정무직 2, 행정4급 2, 행정5급 5, 행정6급 8, 전산6급 1, 행정7급 13, 행정8급 2, 총경 1, 경정 1, 경위 1

2) (재배치) 행정5급 2, 행정6급 3, 행정7급 2

나. 경찰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안 별표 6)

다.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 분야별 법정 기준인력 보장을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193명) (안 별표 5)

- 소방정 1, 소방령 4, 소방경 12, 소방위 79, 소방장 44, 소방교 53

라.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생태독성 검사 등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효율적 인력 배치를 위한 증원(6명)

마. 아리수 수질향상·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한 아리수정수센터 정원 조정

- 시설관리8급 △8 → 공업연구사 +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7조
- 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3. 5.~3. 9.)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709명”을 “18,94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부터 제6호”로, “10,410명”을 “10,40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7,196명”을 “7,38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345명”을 “35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238명”을 “278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3명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공무원”을 각각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를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2 및 별표 4의 제목 중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4의 표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552					
-----	--------	--	--	--	--	--

같은 표의 정무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부시장란 다음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무직 계	4					
-------	---	--	--	--	--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	---	--	--	--	--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	---	--	--	--	--	---

같은 표의 일반직 계란, 4급란, 5급 이하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564					
-------	--------	--	--	--	--	--

4급	249	147	17	8	66	11
----	-----	-----	----	---	----	----

5급 이하 소계	10,141					
----------	--------	--	--	--	--	--

같은 표의 연구직 계란, 연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 계	403	
-------	-----	--

연구사	341	
-----	-----	--

별표 5의 표 중 소방공무원 계란, 소방정란, 소방령 이하 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계	7,389	
---------	-------	--

소방정	30	2		28	
-----	----	---	--	----	--

소방령 이하 계	7,353	
----------	-------	--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에는 두는 경찰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 무 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경찰공무원 계	3					
총경	1					1
경정	1					1
경위	1					1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u>18,709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u>제2호 및 제3호</u>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u>10,410명</u></p> <p>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u>7,196명</u></p> <p>3. (생략)</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345명</u></p> <p>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u>238명</u></p> <p><u><신 설></u></p> <p>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u>소방공무원</u>을 제외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u>소방공무원</u>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③ (생략)</p> <p>제4조(직급별 정원) ① <u>소방공무원</u>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원의</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18,944명</u>----- -----.</p> <p>1. -----<u>제2호부터 제6호</u>----- ----- <u>10,404명</u>-----</p> <p>2. ----- ----- <u>7,389명</u>-----</p> <p>3. (현행과 같음)</p> <p>4. ----- <u>350명</u>-----</p> <p>5. ----- <u>278명</u>-----</p> <p>6. <u>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3명</u></p> <p>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u>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u>----- -----.</p> <p>② <u>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직급별 정원) ① <u>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u></p>

현		행				
<p>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본청과 사업소 간에 1급 일반직 임명에 따른 3급이상 일반직 정원은 관리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신설></p> <p>③ (생략)</p> <p>[별표 2]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별표 4]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p>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513					
정무직계	2					
시장	1	1				
부시장	1	1				
<신설>						
<신설>						
일반직계	10,536					
1급	7	6	1			
2·3급	24	18		1	3	2
3급	19	10		1	8	
3·4급	5	5				
4급	247	147	17	8	66	9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115					
전문경력관 소계	109					
별정직계	37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계	394					
연구관	62	4		34	24	
연구사	332					

개		정					안
<p>원 -----</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별표 2]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p>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552						
정무직계	4						
시장	1	1					
부시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계	10,564						
1급	7	6	1				
2·3급	24	18		1	3	2	
3급	19	10		1	8		
3·4급	5	5					
4급	249	147	17	8	66	11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141						
전문경력관 소계	109						
별정직계	37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계	403						
연구관	62	4		34	24		
연구사	341						

현 행

구 분	계	분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지도직 계	24			2		
지도관	2					
지도사	22					
교육공무원 계	520					
총 장	1			1		
교수 등	450			450		
조 교	69					

[별표 5]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계	분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196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9	2		27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7,161					

<신 설>

개 정 안

구 분	계	분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지도직 계	24			2		
지도관	2					
지도사	22					
교육공무원 계	520					
총 장	1			1		
교수 등	450			450		
조 교	69					

[별표 5]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계	분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389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30	2		28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7,353					

[별표 6]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계	분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경찰공무원 계	3					
총경	1					1
경정	1					1
경위	1					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을 18,709명에서 18,944명으로 총 235명 증원함에 있어 관련 인건비 발생
(정무직 +2, 서기관 +2, 5급 +5, 6급 +10, 7급 +15, 8급 +4, 연구사 +1, 소방정 +1, 소방령 +4, 소방경 +12, 소방위 +79, 소방장 +44, 소방교 +53, 총경 +1, 경정 +1, 경위 +1)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 서울특별시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소계(a)						
구분	세출						
	인건비	8,952,178	18,316,156	18,737,428	19,168,389	19,609,262	84,783,413
	소계(b)	8,952,178	18,316,156	18,737,428	19,168,389	19,609,262	84,783,413
□ 총 비용(a-b)		8,952,178	18,316,156	18,737,428	19,168,389	19,609,262	84,783,413

※ 매년 인건비 상승률 2.3%('21년 기준) 적용 추계

※ 1차년도는 정원 배정시기 고려 6개월분으로 비용추계[정원배정 시기 : '21.7.1.(예정)]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146,768	300,287	307,194	314,259	321,487	1,389,995
	지방세수입	8,805,410	18,015,869	18,430,234	18,854,130	19,287,775	83,393,418
구분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8,952,178	18,316,156	18,737,428	19,168,389	19,609,262	84,783,413

※ 국비는 경찰직 인건비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김철묵(02-2133-673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235명

○ 일반직공무원 : +39명

- 정무직 +2, 서기관 +2, 5급 +5, 6급 +10, 7급 +15, 8급 +4, 연구사 +1

○ 소방직공무원 : +193명

- 소방정 +1, 소방령 +4, 소방경 +12, 소방위 +79, 소방장 +44, 소방교 +53

○ 경찰직공무원 : +3명

- 총경 +1, 경정 +1, 경위 +1

2. 비용소요 추계 : 17,904,356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소요비용	세부내역	비고
합계	+17,904,356	◆ 총계 : +17,904,356	'21년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 일반직(+39명) : +2,835,296	
		▷ 정무직(1급상당) : 115,359 × 1명 = 115,359	
		▷ 정무직(2급상당) : 106,359 × 1명 = 106,359	
		▷ 서기관(+2) : 102,597 × 2명 = 205,194	
		▷ 5급(+5) : 94,000 × 5명 = 470,000	
		▷ 6급(+10) : 74,111 × 10명 = 741,110	
		▷ 7급(+15) : 63,155 × 15명 = 947,325	
		▷ 8급(+4) : 46,181 × 4명 = 184,724	
		▷ 연구사(+1) : 65,225 × 1명 = 65,225	
○ 소방직(+193명) : +14,775,524			
▷ 소방정(+1) : 105,113 × 1명 = 105,113			
▷ 소방령(+4) : 103,071 × 4명 = 412,284			
▷ 소방경(+12) : 92,495 × 12명 = 1,109,940			
▷ 소방위(+79) : 85,352 × 79명 = 6,742,808			
▷ 소방장(+44) : 73,922 × 44명 = 3,252,568			
▷ 소방교(+53) : 59,487 × 53명 = 3,152,811			
○ 경찰직(+3명) : +293,536			
▷ 총경(+1) : 105,113 × 1명 = 105,113			
▷ 경정(+1) : 103,071 × 1명 = 103,071			
▷ 경위(+1) : 85,352 × 1명 = 85,352			

※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1년 기준으로 추계한 것임